

## 보도자료

2014년 4월 16일(수) 배포 시점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의결 안건]

가. 의안조정팀 최현숙 팀장(1380)

[보고 사항]

가. 창조기획담당관 김정렬 과장(1320).

다. 재정팀 고낙준 팀장(1370).

나. 의안조정팀 최현숙 팀장(1380)

라. 통신시장조사과 장대호 과장(1530).

## 2014년 제14차 위원회 결과

□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, 보고 사항 4건이 상정되었음

### [의결안건]

#### 가.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호선에 관한 건

-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전반기 부위원장으로 허원제 위원을 선출하기로 의결함

### [보고안건]

#### 가.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정책과제 마련을 위한 향후 계획에 관한 사항

- 제3기 방통위가 향후 나아갈 길을 제시하기 위해 단장 (기조실장), 실국 총괄 및 KISDI, KISA 전문인력으로 TF를 구성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 제고, 방송광고 제도 개선 및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있어 이용자 차별적 요소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비전 및 정책과제를 마련하기로 보고함

## 나. 법정위원회 구성현황에 관한 사항

-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, 통신이용자·시청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운영 중인 남북방송통신교류추진위원회,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등 11개의 법정위원회 구성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함
- 향후, 상임위원간 법정위원회 위원장(위원)을 분담하고 방통위 의결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는 방송평가위원회,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등 5개 법정위원회 신규위원 위촉 건을 의결할 예정임

## 다.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현황에 관한 사항 (첨부 참조)

-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현황을 보고함

## 라. 단말기 보조금 시장 동향

- 최근 이동통신시장의 번호이동 및 보조금 추이 등 주요 시장 동향과 방통위의 향후 추진방향을 보고함

## <첨 부>

### <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개요>

#### □ 의의

-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·승인을 받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해서 징수하는 법정 부담금(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)

#### □ 징수대상 및 징수율(동법 제25조제2항~제4항,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)

- (징수대상) 방통위는 지상파(DMB 포함), 종편·보도 PP를 소관으로 하며, 미래부는 SO, IPTV, 위성, 홈쇼핑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수
- (징수율) 지상파, 종편·보도 PP는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의 6% 내에서 「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」(고시)으로 세부 징수율 결정
- (징수율 결정) 매년 방송사 재정상태와 방송의 공공성을 고려, 상한의 범위 내에서 징수율을 결정하여 각 방송사에게 부담금 납부통지(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제3항)
- (면제 및 경감) 사업규모나 부담능력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치는 사업자에 대하여 자본잠식률에 비례하여 면제·경감(동법 제25조제5항,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)
  - 위성, IPTV 사업자의 경우 사업초기 3년간 부담금 면제